

의안번호	2200329
의 퇴 인	안철수 의원
회 답 일	2024. 6. 12.
추 계 번호	24F0586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46조(비과세되는 증여세)	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비과세 대상 추가 - 사회복지, 문화, 예술, 교육, 종교, 자선, 학술, 의료 등 공익을 위한 사업 수행 -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6조(비과세되는 증여세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기구의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하게 되면 증여세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증여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, 현 시점에서 해당 관련 규정의 부재로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 현행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과세 증여

재산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현행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상 비과세되는 증여재산

구분	비과세 증여재산
1	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2	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(이하 “우리사주조합”이라 한다)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
3	「정당법」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4	「근로복지기본법」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5	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, 치료비, 피부양자의 생활비, 교육비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6	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7	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
8	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
9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(義死者)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
10	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·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

- 그리고 최근 3년간 증여세 비과세 재산가액 현황을 살펴보면, 2020년 10.6억원, 2022년 9.1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3.5억원을 나타내고 있음

[표 2] 최근 3년간 증여세 비과세 재산가액 현황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0년	2021년	2022년	합계
비과세 재산가액	10.6	13.7	9.1	33.5

자료 : 국세청, 「국세통계연보」, 각 연도.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최천규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천규	02-6788-4838	choi1009@assembly.go.kr